

부산직할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태식

이 개정조례안은 1994년 7월 11일 송석복의원외 13명 의원이
발의하여 94년 8월 2일 운영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음.

1. 안건명: 부산직할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19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 1431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일비 및 여비가 인상되어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이를 반영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제 5조(여비의종류) 제 1항중 “국내여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식탁료로 구분한다”중 “식탁료”를 삭제.
- 제 6조(일비지급기준)중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1일 30,000원”에서 “1일 50,000원”으로 인상하도록 함.
- 제 8조(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는 내용이 개정 조례 안(별표1) 내용에 포함되므로 삭제.
- 제9조(국내, 외 여비 지급 범위의 조정)를 신설.
- 제 7조(여비지급기준)중 별표 1의 국내여비지급 기준표 및 별표 2의 국외여비지급 기준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맞추어 현지 교통비,

숙박비등 구내여비의 지급 기준을 평균 약 23% 인상하며, 현실을 반영하여 현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의 갑지, 올지 구분을 삭제하고, 국외여비의 숙박비, 식비를 평균 약 50% 인상함.

- 부칙 단서 조항을 “제 6조 및 제 7조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로 하여 이번 회기 부터 적용토록 하였음.

4.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 32조(별지참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5조(별지참조)

5. 검토의견

-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 지난 7월 6일 대통령령 제 1431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5조(일비와 여비의 지급)증 별표4, 별표5, 별표6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이 건 조례에 대한 개정안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본 개정조례안 제 9조에 국내여비 규정 및 국외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 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되기 까지는 의원 여비 지급 기준에 공무원 국내·외 여비조정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그 동안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이 늦어져 감수해온 불이익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